

공동실험실습실운영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08. 1. 1

개정 2009. 3. 1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실험·실습 및 연구용 기자재 중 공동 활용가치가 높은 고가의 기자재를 공동 구입·보유·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기자재의 활용으로 사용효율을 극대화하여 교육 및 연구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공동실험·실습실”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설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설비를 갖춘 장소로써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실험·실습실을 말한다.

제 3조 (운영방침) 본 캠퍼스의 공동실험·실습실의 활용 및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및 유사 실험·실습실 및 설비의 독점사용 지양
2. 공동 실험·실습설비의 우선 지원
3. 실험·실습기자재 활용의 극대화
4.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5. 기타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위원회) ①공동 실험·실습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실험·실습실운영 위원회를 대전 및 성남캠퍼스별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②캠퍼스별 위원회

1. 대전캠퍼스 :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되며, 각 학과 학과장 및 총무관리팀장이 위원이 된다. 총장이 위촉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2. 성남캠퍼스 :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기획조정처장·교학처장·사무처(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3.1)

③당연직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동 실험·실습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동 실험·실습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공동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4. 공동 실험·실습설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 실험·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 (소관업무) ①공동 실험·실습실의 관리책임자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와 교직원
의 연구활동을 위한 실험·실습실은 교학지원팀장으로 하고, 교직원의 공동실험연구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위한 실험·실습실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한다.(개정
2011.3.21)

②각 공동 실험·실습실의 운영책임자는 관련연구소장·관련학과장 및 교원 중에서 교
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1.3.21)

③각 공동 실험·실습실의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동 실험·실습실의 운영계획 수립
2. 공동 실험·실습기자재의 활용 및 유지 관리
3. 공동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구입 신청에 관한 사항
4. 공동 실험·실습실설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1)

④위원회의 행정업무는 교학지원팀,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관장한다.

제 8조 (소위원회) ①각 공동 실험·실습실의 운영책임자는 공동 실험·실습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험실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설배치·구입 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본교 교원 및 외부인 이용신청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

제 9조 (기자재 이관) ①학과의 보유기자재중 공동활용 실험·실습을 위하여 선정된 경우
에는 이를 공동 실험·실습실로 이관하여 설치한다.

②본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배정) ①학과간의 중복 사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는 공동
실험·실습실 이용시간을 배정한다.

②전임교원 및 외부인이 공동 실험·실습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서 요약
물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부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3.21)

③산학협력단 부단장은 본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5 일 이내에 가
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3.21)

제11조(공동실험실습실)

①성남캠퍼스에 설치·운영하는 공동실험실습실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실습실
2. 어학실습실
3. (삭제 2011.3.21)
4. 연구지원센터 소속 실험실(개정 2011.11.01)
5. 전자현미경실
6. 의생명실험실
7. 산학연공동실험실

8. 보건의료지원센터

9. (삭제 2011.3.21)

10. 지역혁신센터(RIC) 소속 실험실(개정 2011.11.01)

11.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실험실

②대전캠퍼스에 설치·운영하는 공동실험실습실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수기훈련센터

2. 제1, 2 전산실습실

3. 어학실습실

4. (삭제 2011.3.21)

5.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6.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실험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